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제 정 2022. 1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회사”라 함)의 최고경영자의 교체 상황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회사의 경영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경영자의 정의 및 자격 요건)

- ① 이 규정에서 최고경영자라 함은 회사 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로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또한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복수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최고경영자는 시장, 고객,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 달성 의지가 있는 자
 2. 법과 윤리강령 모두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3. 사업 통찰력 기반의 우수한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4.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실행 의지와, 조직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

제3조(절차의 개시 사유)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는 최고경영자의 신규 선임을 필요로 하거나 임기만료, 사임, 해임, 유고 등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절차의 개시 시기)

-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일 이전 승계절차를 개시한다.
- ②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사임, 해임, 유고 등의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계절차를 개시한다.

제5조(승계 절차)

① 재선임 시

1.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전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인사부서장의 검증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정한다.
2. 회사는 선정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3.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최고 경영자 직을 수행한다.

② 신규선임 시

1.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전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인사부서장의 검증을 통하여, 관리중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에서 신입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정한다.
2. 회사는 선정된 신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다만 후보가 이미 사내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 부의 절차는 생략한다.
3.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신규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한다.

제6조(비상상황 시)

- ① 최고경영자 유고 시에는 정관 제23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신규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한다. 다만 후보가 이미 사내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 부의 절차는 생략한다.

제7조(후보군 확보 및 육성)

- ① 회사는 내부 후보자 관리 및 육성과 외부 전문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역량있는 최고경영자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 ② 회사는 지속적인 후보군의 선발 및 육성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공백에 따른 리스크

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재개발연구원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성장 지원을 통하여 역량있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확보한다.

제8조(후보군 관리)

- ① 회사는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갱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②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하여 경영자 제도에 기반한 성과 및 역량 피드백 중심으로 후보군을 관리 한다.

제9조(주관부서)

- ①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인사부서와 이사회 주관부서로 한다.
-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내/외부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관리, 검증 업무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 3. 기타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절차 지원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